

	실장	재가문서요약전	
조정관			
	2. 2		
국무총리실			

'95 정부조직관리지침

- 공무원 정원의 동결기조 유지
 - 교원을 제외한 공무원 정원의 현수준 유지
 - 분야별 종합조직진단 실시로 합리적 조직관리 도모
 - 위원회 정비
- 부처별 기능과 직급별 정원의 범위내에서 과단위 조직 편성의 자율권을 각 부처에 부여
- 세계화·지방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행정규제 완화방안 강구
- 정부기능의 전면 재조사로 지방이양사무 발굴·조치

총 무 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 전화 720-4097 / FAX 736-4803

문서번호 조기12210 -

시행일자 1995. 1.

받는 곳 (제 1 안)
내부결재

취급		장 관	국 무 총 리
보존			
차 관	수진수	611474	01호자
국 장	국통록	기획관리실장 제도심의관	
과 장	1부 2부	조직1과장 조직2과장	제도2과장
기안	7월 상인	제도1과장	협조

제 목 '95 정부조직관리지침 수립 · 시행 (국무총리 지시 제1995 - 호)

행정기관의 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95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수립 · 시행하고자 하오니 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95 정부조직관리지침 1부. 끝.

(제 2 안)

받는 곳 받는곳 참조

제 목 '95 정부조직관리지침 통보

행정기관의 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5 정부조직
관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95 정부조직관리지침 1부. 끝.

받는 곳 가(-03~04), 나(01~18), 다(01~18), 라(01~05)

(제 3 안)

받는 곳 받는곳 참조

제 목 '95 정부조직관리지침 통보

'95 정부조직관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95 정부조직관리지침 1부. 끝.

받는 곳 가(03~0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 무 총 리

총 무 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 전화 720-4097 / FAX 736-4803

문서번호 조기12210 - 18

시행일자 1995. 1. 28.

받는 곳 받는곳 참조
(행정2정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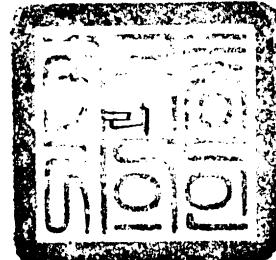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95. . .		
처리 과	번호		결재 · 공람	
담당자				

제 목 '95 정부조직관리지침 통보(국무총리지시 제1995-3호)

행정기관의 조직과정원에 관한 통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5 정부조직 관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95 정부조직관리지침 1부. 끝.

국 무 총



받는 곳 가(-03~04), 나(01~18), 다(01~18), 라(01~05)

1995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1995. 1

총 무 처

'95년도 정부조직관리 기본목표

- 1995년은 『세계화 추진 원년』으로
- 정부조직관리에 있어서도 행정과 지방의 세계화를 위하여 '작고 능률적인 정부'를 구현함을 그 기본목표로 하고, 정부부문의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 첫째, 행정기구 및 정원의 동결기조를 유지한다.
 - 둘째, 정부조직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책임운영 체제를 강화한다.
 - 셋째, 민간부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행정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한다.
 - 넷째, 지방자치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국가기능의 과감한 지방 이양 등 근본적인 지방정부 역량제고 방안을 강구한다.

차례

1 기구·정원의 동결기조 유지

2 부처별 조직의 책임운영체제 확립

3 행정규제완화

4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및 민간위탁

5 행정사항

1

기구·정원의 동결기조 유지

- 신정부 출범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간소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교원을 제외한 국가공무원 정원의 현수준 유지

가. 직제개정시 상계원칙의 철저한 적용

- (1) 각 부처는 세계화·지방화 등 행정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행정의 생산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제를 개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정원을 상계 활용하는 범위내에서 조정한다.

* 행정부공무원 정원의 증감추이

구 분	'91.12	'93. 2	'93.12	'94.12
국가공무원	553,104	566,310	568,413	567,435
지방공무원	286,697	310,957	316,415	325,028

나. 기구·인력 소요사업 사전협의

- (1)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이하 직제통칙) 제9조의2에 의거 익년도 소요정원 심사와는 별도로 기구의 신설이나 증원이 예상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령의 제·개정 또는 당해사업의 시행을 위한 예산요구시에 당해사업의 필요성과 기구·인력의 소요에 관하여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정부조직진단 실시

- (1) 총무처장관은 직제통칙 제27조의2에 의거 정부조직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조직진단을 실시하되, '95년도는 보건복지부 등 사회문화관련 부처를 중점적으로 진단한다.
- (2) 조직진단은 자료수집 분석과 현지실사 진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현지실사 진단은 6~7월중에 실시한다.
- (3)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정부조직을 보강, 감축, 현상유지 분야로 구분 관리함으로써 행정수요와 연계된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 * 단기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최초 직제개정시 우선 반영토록 하고, 장기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분야별로 합리적인 관리방향을 정립한다.

라. 위원회 정비

- (1) 1995년은 매2년 주기로 실시되는 『제8차 위원회 정비의 해』로서 '95년 이전에 정비대상으로 확정된 위원회의 조속한 법령조치와 아울러 현행 위원회에 대한 전면 재조사·검토후 다음 기준에 의거하여 조치한다.

-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운영이 부진한 위원회 → 폐지
- 기능이 유사·중복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 → 통·폐합
- 위원수가 과다하거나 고위직 위주로 운영되는 위원회 → 축소 조정

마. 정부산하단체 관리

- (1) 각 부처는 『정부산하단체 조직관리에 관한 지침』(조기01210-177, '92. 9. 7)을 철저히 이행도록 하고, 산하단체관리에 있어서도 정부조직관리에 준하여 기구증설이나 인력증원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한다.
- (2) 총무처는 정부산하단체 관리대상을 정부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체로 국한하여 관리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산하단체관리의 실효성을 높인다.

2

부처별 조직의 책임운영체제 확립

- 행정여건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생산성 높은 정부조직 구축

가. 과단위 조직운영 자율성 부여

- (1) 정부는 각부처 조직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부처별 조직운영의 합리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부처별 기능과 직급별 정원 범위내에서의 과단위 조직 개편시, 총무처장관의 직제개정안 제안권을 각부처 장관에게 위탁한다.
- (2) 총무처는 과단위 조직편성의 자율권을 각 부처에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95. 3까지 행정기관의 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을 개정한다.

나. 탄력적 조직관리제도의 적극 활용

- (1) 각 부처는 행정수요 변동에 기구의 신설이나 정원의 증원을 통하여 대처하는 관행을 지양하고, 일시적이거나 비정규적인 새로운 업무의 발생시 직제통치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간 정원의 상호이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대처하도록 한다.
- (2) 또한, 각 부처는 긴급하게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제통치 제1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시조직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다. 부처별 조직의 자율적 책임운영체제 정립

- (1) 각 부처는 생산성 높은 행정조직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세계화 추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국정과제로 인식하고 조직운영의 합리화를 위한 자율적 조직쇄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2) 각 부처는 국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현지성·즉시성·자율성 등이 필요한 사무에 대하여는 위임·위탁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조치하도록 한다.

○ 세계화를 저해하는 경쟁제약적 행정규제의 근본적 정비와 민간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행정규제 생성 억제

가. 기존 규제사무의 전면 재검토·정비

(1) 각 부처는 세계화·지방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기존의 소관 규제사무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가) 국제규범에 부적합한 낡은 제도, 자율경쟁원칙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부적합한 경쟁제약적 규제등을 과감하게 폐지한다.

(나) 존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인·허가등 규제 주체의 전환, 규제수준·방법의 변경 및 규제절차의 간소화 여부를 적극적으로 재검토하여 규제합리화 방안을 강구한다.

나. 신설 규제에 대한 사전심사 강화

(1) 모든 규제는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4조에 의거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규제의 신설·강화시 법령에서 규정한 사전심사 절차를 준수한다.

* 세부내용은 『'95행정제도개선 종합계획수립』 기본지침('94.12.24) 참조

4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 집행적 업무의 과감한 지방이양으로 지방정부 역량 보강

가. 대상사무 발굴

- (1) 재정경제원 등 15개부처와 내무부가 지정하는 광역자치단체는 해당 중앙정부의 기능을 <별첨5, 사무구분 판단기준>에 따라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로 구분하고, 지방이양 희망사무를 총무처에 제출하도록 한다.
- (2) 또한, 각 부처는 『중앙·지방사무총람』 상의 국가사무중 지방이관 희망사무를 적극 발굴하여 조치하도록 한다.

나. 지방이양 확대기반 조성

- (1) 총무처는 지방이양 중점추진 분야를 선정하여 지방이양 대상사무를 발굴하되, 『지방이양 합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양사무를 확정한다.
 - *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기능, 지방의 존립·지원 및 교육활성화 관련 기능,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지역시책적 분야를 검토대상으로 선정·발굴하되, 중점추진 분야별 지방이양대상 발굴 및 이양추진 사업은 연차적·단계적으로 실시한다.

(2) 법제처는 국가사무·기관위임사무·자치단체사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법령규정형식을 강구하고, 각 부처는 지방이양 확정사무의 이양조치(법령 개정) 시 법제처의 새로운 법령규정형식에 따른다.

다. 사전·사후관리체제 강화

(1) 각 부처는 이미 시달린 "행정권한 위임·위탁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업무 추진 지침"(국무총리지시 제11호 '91.7.9)을 철저히 이행하여 사전·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2) 각부처(특히 재정경제원)는 국가보조 사업 등의 지방이양에 따른 예산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총무처와 협의하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는 이양받은 업무의 처리에 있어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고, 자치단체 스스로의 책임하에 합리적으로 처리도록 한다.

5

행정사항

가. '96 소요정원 제출

(1) '96년도 소요정원은 증원이 불가피한 분야에 한정하여 심사할 계획이므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95. 4. 30까지 기한을 염두하여 소요정원(안)을 총무처에 제출하기 바람.

나. 기구·인력 소요사업 사전협의

(1)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구개편이 수반되는 사업추진시에는 <별첨1, 기구 개편이 수반되는 사업등의 사전협의 집행지침>을 참조하여 총무처장관과 사전 협의하기 바람.

다. 위원회 정비 및 실태조사

(1) '95년 이전에 정비대상으로 확정된 위원회중 <별첨2, 미정비위원회 현황>에서 열거하고 있는 위원회에 대하여, 각 부처는 '95. 6말까지 정비토록 하되, 법률에 근거한 위원회는 최초 법개정시에 조치하기 바람.

(2) 각 부처는,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소관 위원회에 대하여 <별첨3, 위원회 운영실태 조사서>를 작성 '95. 3. 31까지 총무처에 제출하기 바람.

라. 지방이관 및 민간위탁

(1) 지방이양분야

- (가) 각 부처는, "지방이양합동심의회"에서 지방이양 추진대상사무로 확정된 사무 (별책, 『지방이양관련목록』 참조)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하고 이양된 사무는 그 내용을 총무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통보하여야 함.
- (나) 이양대상 부처는 소관사무에 대한 이양여부 검토결과를 <별첨4의 1.2호 서식>에 의거 작성 '95. 3. 31까지 총무처에 제출하기 바람.

※ 지방이양 대상 부처

이양대상 부처(15개 부처)		기타 부처(20개 부처)	
분야별	부처명	분야별	부처명
지역산업 경제분야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건설교통부, 농림수산부 산림청, 수산청, 해운항만청	외교. 국방 국내질서 정책조정· 지·원	통일원, 외무부, 국방부 병무청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총무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보건복지부, 환경부, 교육부, 노동부, 문화 체육부, 공보처	재정·금융 사회간접자본	국세청, 관세청 철도청
지방관리 분야	내무부, 조달청	고도의 전문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처 통계청, 특허청, 공업진 흥청, 농촌진흥청, 기상청

(다) 내무부는 시. 도등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양대상 부처(15개)의 국가사무중 지방이양 희망사무를 <별첨4의 1.2호서식>에 의거 작성토록 하여 '95. 3. 31 까지 총무처로 제출하기 바람.

* 이양완료 또는 동의된 사무 등 중복된 이양희망사무 제외
(별책, 『지방이양관련목록』 참고)

(라) 각 부처는 사후관리지침에 따른 이행사항을 <별첨4의 3호서식>에 의거 작성 3월말 및 9월말에 총무처에 제출하기 바람.

(2) 지방위임 및 민간위탁분야

(가) 각부처는 '95년도중 위임·위탁추진대상 사무에 대하여 그 조치계획을 <별첨6의 서식>에 의거·작성 '95. 3. 31까지 총무처에 제출하기 바람.

마. 협조사항

(1) 각 부처는 금년도 정부조직관리가 본지침에 따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내무부와 교육부는 지방공무원에 관하여도 본지침에 준하여 관리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 별첨 1 】

『기구개편이 수반되는 사업등의 사전협의』 집행지침

1. 제도의 목적

- 정부조직관리의 장기예측을 가능하게 하고,
- 정부조직의 팽창요인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함.

2. 근 거

- 행정기관의 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9조의2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기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법령의 제정·개정, 청사의 신·개축 또는 시설·장비도입 등으로 기구의 신설이나 증원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당해사업의 시행을 위한 예산요구시에 총무처장관과 이를 협의하여야 한다.

3. 협의대상

- "기구신설이나 인력증원의 수반이 예상되는 사업"
 - 향후 직제개정이 필요한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단순한 청사개축이나 신축이전 등 기구신설이나 인력변동이 전혀 없는 사업은 제외함.
 - 계속사업의 경우 변동사항여부 및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내역도 포함

4. 협의시기

- 각 부처에서 재정경제원에 예산요구서 제출시에 동시 제출

5. 협의시 제출서류

- 사업계획개요
 - ① 목적 ② 필요성 ③ 사업기간(준공예정일자등) ④소요예산(총사업비)
 - ⑤ 기타 관계부처협의여부, 재원조달방안등
- 예상되는 기구인력소요 및 인력활용계획
 - ① 기구인력소요의 필요성 및 그 규모
 - ② 소요제기 기구인력에 대한 설명자료
 - * 주요업무내용, 유사기구와 인력비교, 해당인력의 변화추이 등
 - ③ 기존 기구 · 인력의 활용계획
 - * 기관내 또는 기관간 유사증복 및 기능감소분야의 상계조정방안 등
 - ④ 기타 외국의 사례등 소요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
- ※ 첨부된 서식1에 의거 작성 · 제출

6. 행정사항

- 총무처는 각 부처로부터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사업의 필요성 및 기구 · 인력의 소요규모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당해기관에 통보
 -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정경제원에도 통보
- 총무처와 협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각 부처의 해당년도 실제 개정시 조치

< 서식 1 > ○○부 1996년도 신규사업 계획

1. 총괄표

사업명	사업기간	준공예정	소요기구	소요인력	비고
1. ○○지방청 신축공사	2년 ('94.3 - '96.3)	1996.6.30	○○지방청 (2국 5과)	총 35명 (4급1, 5급이하34)	
2. ○○사업소 신축공사					
계(건)				총○○○○명 (2급○○, 4급○○ 5급이하○○)	

* 내역은 예시임.

2. 사업별 세부내용

가. ○○지방청 신축공사

(1) 사업계획 개요

(2) 예상되는 소요기구인력 및 인력활용 계획

나. ○○사업소 신축공사

【 별첨 2 】

미정비위원회 현황

* 총 31개 위원회

소관부처	위 원 회 명	근 거	정비구분	비 고
행정조정실	해양정책조정위원회	국무총리훈령	통합	
재정경제원	사회간접자본투조정위원회 국민투자기금운용심의회 기술개발금융정책심의회	대통령훈령 법률	폐지 소속변경 폐지	
총무처	공무원교육훈련심의위원회 공무원보수조정위원회	대통령령 법률	폐지 폐지	
내무부	도서개발심의위원회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수도권광역행정조정위원회	법률	폐지 폐지	
국방부	징발재산심의회	법률	폐지	
교육부	과학교육심의회 중앙산업교육심의회	법률	폐지 폐지	
농림수산부	농수산물가격심의위원회 낙농심의회 농수산물수출진흥심의회 농업정책심의회 조지조성심의위원회 사료품질관리위원회	법률	폐지 폐지 폐지 직급조정 직급조정	
통상산업부	영업심의회 광업개발심의회 전기공사업조정위원회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법률	폐지 폐지 폐지 소속변경	
정보통신부	전산망조정위원회	법률	소속변경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대책위원회	법률	소속변경	
건설교통부	유로도로심의회 평화의댐건설추진위원회 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 수도권정비위원회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	법률 법률 법률 법률 법률	폐지 폐지 폐지 소속변경 소속변경	
조달청	물품관리심의위원회	법률	폐지	
산림청	중앙화전정리심의위원회	법률	폐지	

위원회 운영실태 조사서

① 위원회명						③ 근거법령			
③ 설치목적						④ 설치연월일			
⑤ 위원회 구성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원 원	위원 총수		공무원	교 수	협회·단체 임직원	전 문 가	여 성	기 타
	간 사	직 위		직 급		위원회 성 격			
⑥ 위원회 기능									
⑦ 분과위원회 등	명 칭			구 성			기 능		
⑧ 운영실적 (`93.1. - `94.12)	본 회 의					분 과 회 의			
⑨ 예산집행내역	'93					'94			
⑩ 위원회 정비에 관한 의견									

【 별첨 4 】

지방이관 관련사무보고 작성 서식

〈 서식 1 〉 중기능 단위 국가·지방사무구분 총괄표

■ 총괄

부처명 :

(1) 중기능 수			(2) 지방이양 희망사무 수			비고
국가	지방	계	①국가→ 지방사무	②위임→ 지방사무	계	

■ 중기능별 국가 / 지방 사무현황

(3) 국가사무	(4) 지방사무
계 :	계 :

※ 조사표 작성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처 조직국 제도1과로 문의하기 바람.

(전화 : 720 - 2062~3)

〈서식 1호 작성요령〉

- (1) 중기능 수 : 이양대상 부처(15개)의 중기능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국가 또는 지방 사무로 판단하고, 그 결과를 국가/지방사무로 구분하여 중기능 수 기재
 * 서식2의 부처별 중기능 단위 [국가/지방사무 구분]란의 총계임
 (예 : 문화체육부 중기능 수 34개 중 국가기능 21개 및 지방기능 13개로 판단함)
- (2) 지방이양 희망사무 수 : 이양대상 부처(15개)별로 국가 및 지방위임 사무에 대하여 서식2의 [의견조회]란에 이양을 희망한 단위사무(1로 표기)의 총계를 ①국가사무→지방사무로 이양희망한 경우와 ②지방위임사무→지방사무로 이양희망한 경우로 구분. 기재
 * 현행 지방사무 및 별책 목록상 이양완료 및 확정사무는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여 중복기재가 없도록 할 것
- (3), (4) 중기능별 국가/지방 사무현황 : 중기능수 (1)번의 해당 중기능명 기재
 (괄호안 숫자는 「중앙·지방사무 종람('94.1. 총무처)」 상의 대·중기능의 고유번호임)

(예) ■ 총괄

부처명 : 문화체육부

(1) 중기능 수			(2) 지방이양 희망사무 수			비고
국가	지방	계	①국가→지방사무	②위임→지방사무	계	
21	13	34	35	57	92	

■ 중기능별 국가 / 지방사무 현황

(3) 국가사무		(4) 지방사무	
계 : 21		계 : 13	
1.	증기능명 기재 (1.1)	1.	증기능명 기재 (1.3)
2.	(1.2)	2.	(2.1)
3.	(2.1)	3.	(2.3)
.	.	.	.
21	(5.1)	13	(4.1)

〈 서식 2 〉 이양대상부처 의견조회 서식

부처명 :

대기능명 :

증기능명 :

〈 의견조회 〉

사무구분 소기능	국가사무	지방위임사무	지방사무	관계법령	(1) 의견조회		
계							
(2) 증합 (각부처 및 지방자치 단체 의견)	이양희망	위임희망	이양완료	이양확정	사무폐지	법령개.폐	기타

〈 국가사무 / 지방사무 구분 [증기능 단위] 〉

(1) 사무구분표

구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증합
국가사무			
지방사무			

(2) 판단사유 :

〈 관련예산 및 인력 내역 〉

구분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관련예산 지출 (단위 : 천원)	
관련 인력 (단위 : 명)	

< 지방이양시 문제점 및 조치사항 >

구 분	중 앙 부 처 또는 지 방 자 치 단 체
① 예 산 란	
② 인 력 란	
③ 법적조치란	
④ 기 타 (행정.기술 지원 등)	

< 종합의견 >

〈 서식 2호 작성요령 〉

[의견조회 서식]

※ (1) 의견조회 및 (2) 종합란만 기재할 것(서식은 총무처 제공 예정)

(1) 의견조회 : 국가사무와 지방위임 사무에 한하여,

1(지방이양 희망), 2(지방위임 희망:국가사무만 해당), 3(이양완료), 4(이양확정)
5(사무폐지, 조항삭제), 6(법령개.폐), 7(기타:민간위탁.이양, 규제완화 등) 중
해당번호를 기재하고, 3,4,5,6은 확정일자를 (년.월.일)로 기재

* 3.4(이양완료, 확정)는 별책 「지방이양 목록」을 참고하여 작성(중복 배제)하고,
6(법령개.폐)은 관계 법령이 바뀐 경우 그 법령으로 수정하여 기재

- 1. 지방이양 희망 : 국가사무와 지방위임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넘겨 지방의 고유
권한과 책임하에 수행토록 하려는 사무
- 2. 지방위임 희망 : 국가사무를 현지성 등의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처리고자
하는 사무
- 3. 이양완료 : 법령상 처리권자가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시.도)로
개정된 사무
- 4. 이양확정 : 「지방이양 합동심의회」 결과 지방이양이 확정된 사무
- 5. 사무폐지 : 법령상 관련조항 삭제로 단위사무가 없어진 사무(민간이양 포함)
- 6. 법령개.폐 : 관련 법령의 개정.폐지.통합 등으로 근거법령이 바뀐 사무
- 7. 기타 : 국가사무를 민간에 위탁.이양하고자 하는 사무, 규제완화가 필요한
사무 등

(2) 종 합 : 중기능의 각 단위사무에 대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의견조회 결과를
종합하여 기재

(예)

부처명 : 내무부

대기능명 : 4. 지방행정기획

중기능명 : 2.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사무구분 소기능	국 가 사 무	지방위임사무	지방사무	관계 법령	(1) 의견조회
소1. 임용권 행사	1. 공개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 임용 및 결원 보충의 조정			지방공무원법 제30조②	1

사무구분 소기능	국 가 사 무	지방위임사무	지 방 사 무	관 계 법 령	(1) 의견조회		
소5. 인사운용 지도·감독	4. 인사보수 제도 관계법령 제· 개정			헌법 제95조			
	5. 조례규칙준칙 시달			지방공무원법 제81조	1		
	6. 인사행정 지도· 감독			지방공무원법 제81조	1		
	7. 인사교류 권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2①	1		
	8. 특수학교 졸업자 특별임용 승인			지방공무원임 용령 제17조 ①4	1		
	9. 5급 공무원에의 승진시험 응시 배수 조정승인	1. 서울시만 위임 (위임위탁규 정 제24조 ⑩1호바목)		지방공무원임 용령 제35조 ②	1		
	10. 특별승진 임용 승인	2. 서울시만 위임 (위임위탁규 정 제24조 ⑩1호바목)		지방공무원임 용령 제38의4 ①2.4호	1		
	11. 지방공무원 사전전보 승인	3. 서울시만 위임 (위임위탁규 정 제24조 ⑩1호가목)		지방공무원임 용령 제27조 제2항	4 (94. 12.8)		
소9. 지방공무 원 임용 후보자 장학제도 운영			32.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선발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 4			
			33. 장학금 지급	지방공무원임 용후보자장학 규정 제6조 16호			
계	19	8	33				
(2) 종합 (각부처 및 지방자치 단체 의견)	이양희망	위임희망	이양완료	이양확정	사무폐지	법령개.폐	기타
	12			10			

[국가 / 지방사무 구분]

- 별첨5의 "사무구분 판단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기능 전체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사무로 구분기재(해당란에 ○표)하고, 그 사유를 약술
예) 중앙부처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기능을 지방사무로 판단한 경우

(1) 사무구분표

구 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종 합
국가사무			
지방사무	○		

(2) 판단사유 : 지방공무원의 인사제도 및 관리. 운용 등은 지방자치제 실시 기반이 되는 자치행정권의 주요 내용이므로 지방 고유사무임

[관련예산 및 인력 내역(기준 : '95년도 사업)]

- 중기능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총 지출규모) 및 인력(현원)을 아래 예를 참고. 기재(예)

구 분	중 앙 부 처 또는 지 방 자 치 단 체
관련예산 지출 (단위 : 천원)	일반업무 추진비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등 재정지원 : * 관서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은 일반업무추진비에 포함
관련 인력 (단위 : 명)	○ 총괄 : 개교, 개설, 총 ○○名 . ○ 총괄 : 개교, 개설, 총 ○○名 (국가직 : ○○명, 지방직 : ○○명)

[지방이양시 문제점 및 조치사항]

※ [국가/지방사무 구분란]에서 당해 중기능을 지방사무로 판단한 경우에만 작성

(예)

구 분	중 앙 부 처 또는	지 방 자 치 단 체
① 예 산 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양시 예상되는 문제점 기재 ◦ 이양시 추가적 재정부담 규모 (단위: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양시 필요한 재정조치 ◦ 추가지원 필요예산 기재(단위:천원)
② 인 력 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양시 지방공무원 능력부족 내용 (구체적 예시) ◦ 추가 소요인력 기재 :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양업무처리 추가인력 및 능력확보 계획(구체적 기재) ◦ 추가 소요인력 기재 : 명
③ 법적조치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양에 따른 정비대상 법령기재 (의견조회표상 근거법령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양에 따른 정비대상 법령기재 (의견조회표상 근거법령 제외)
④ 기 타 (행정.기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양에 따른 교육.지침.정보제공 내용 등 기재 ◦ 지방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내용(구체적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양에 따른 교육.지침.정보제공 내용 등 기재 ◦ 이양에 따라 필요한 기타 지원내용 (구체적 기재)

[종합의견]

※ 총무처 검토 공란임

< 서식 3 > 지방이양 추진상황 및 사후관리의 보고

부처명 : 작성자 : 과 ○○○ (TEL : -)

(1) 소기능명			(2) 대.중.소 기능고유번호	(*)
(3)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 이양일자)	단위사무명(근거법령 : 이양일자) →법령개정일자			
(4) 통보관련근거. 제목. 이양사실 통보일	① 관련근거(문서번호) : ② 공문제목 : ③ 이양사실 통보일 :			
(5) 통보대상 자치단체	① 시.도 : (총 개 기관)			
	① 시.군.구 : (총 개 기관)			
(6) 감독범위조정 통보내용 및 감독개선내용				
(7) 소기능별 업무 수행능력 향상 을 위한 지도. 지원 사항	① 지침부여 (건)	② 교육실시	정 기 : 회	총 회
	③ 인 력 (명)		수 시 : 회	
④ 예 산 (천원) ⑤ 정보.기술제공 (건)				
(8) 실태확인 및 평가실시	① 실시년월일 :			
	② 주요내용 :			
	③ 자치단체 수용태세 :			
	④ 자체단체 건의사항 :			

※ 조사표작성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처' 조직국 제도1과로 문의하기 바람.

(전화 : 720-2062~3)

< 서식 3호 작성요령 >

- (1) 소기능명 : 지방이양 관련 목록(별첨)상의 이양대상 사무가 포함된 소기능명을 기재
(예 : 지방조직 설치 및 기구개편)
- (2) 대.중.소기능 고유번호 : 당해 소기능의 「중앙·지방사무 총람」 상 대.중.소기능 고유번호 기재(예 : *4.1.1)
- (3) 단위사무명 : 소기능별로 이양조치(법령개정)된 단위사무명을 기재하고, 사무별 근거 법령 및 이양일자를 ()안에 기재
(예) 지방공무원 사전전보 승인(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②항: '94.2.10)
- (4) 통보관련 근거.제목.이양사실 통보일 : ①통보한 공문의 문서번호, ②공문의 제목
③주무부처에서 해당 자치단체로 이양사실을 공문 또는 기타의 방법
으로 통보한 일자(예 : ○○년 ○월 ○일)를 기재
- (5) 통보대상 자치단체 : ①②번중 통보대상 자치단체 및 기관수를 기입
- (6) 감독범위조정 통보내용 및 감독개선 내용 : 주무부처에서 이양사무에 대한 감독범위를
자치단체에 설정통보한 내용 또는 자치단체에 대한 감독 관련 제도.관행
등을 개선(승인.보고폐지, 사후보고전환등)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약술
- (7) 소기능별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지도.지원사항 : 다음의 예를 참고하여, 소기능별로
①번부터 ⑤번까지의 사항을 기입한다.
(예) ①지침부여(2건), ②교육실시 [정기 : 2회]
[수시 : 1회] 총 3회
③ 인력 (3명) ④예산 (1,000천원) ⑤정보.기술제공 (4건)
- (8) 실태확인 및 평가실시
 - ① 실시년월일 : 실태를 직접 조사한 년월일자
 - ② 주요내용 : 실태확인.평가의 주요착안 사항
 - ③ 자치단체 수용태세 : 사무처리에 대한 자치단체 공무원의 전문지식,
능력정도등 파악
 - ④ 자치단체 건의사항 : 이양사무에 대한 자치단체 개선요구사항 및
기능이양과 관련된 제반건의내용 기재

※ 1개 소기능상 단위사무의 근거법령이 2개·이상일 경우 : 근거법령 별로 서식 작성 요함

[별첨 5]

사무구분 판단기준

1. 적용 원칙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이 적절한 기능을 발굴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판단기준을 단위사무, 소기능, 중기능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가. 전국적 통일성 대 지역성

- (1) 국가의 종합적 정책 또는 계획을 수립·조정하는 업무인가? (중앙)
지역의 개별적 이해관계·편익 또는 지역주민의 생활과 직접 관계되는가? (지방)
- (2) 사무처리 기준의 통일적인 설정 및 적용이 필요한가? (중앙)
사무처리에 있어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어 하는가? (지방)
- (3) 사무효력(사업의 결과 또는 파급효과)이 전국적인가? (중앙)
사무효력(사업의 결과 또는 파급효과)이 지역적인가? (지방)
- (4) 주민의 이해관계가 간접적인가? (중앙)
주민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인가? (지방)
- (5) 지역주민의 참여 필요성(또는 장소적 근접성)이 적은가? (중앙)
지역주민의 참여 필요성(또는 장소적 근접성)이 많은가? (지방)
- (6) 필요한 정보의 수집대상이 전국적인가? (중앙)
필요한 정보대상이 지역적 정보인가? (지방)

나. 경제적 효율성

- (1) 광역적·대규모 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경비절약·능률성제고 등 이익이 있는가? (중앙)

- (2) 당해 자치단체외에 다른 자치단체에까지 외부효과가 미치는가? (중앙)
- (3) 자치단체간의 경쟁효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가? (지방)
- (4) 지역적 실험의 필요성이 있는가? (지방)

다. 업무수행능력 (수용태세)

- (1) 사무수행을 위한 예산.정보.기술수준 고려시 지방에 의한 업무수행이 곤란한가? (중앙)
- (2) 사무수행을 위한 지방공무원의 능력이 충분한가? (지방)
- (3) 자치단체 스스로 또는 국가의 보완적 지원을 통하여 지방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무인가? (지방)
- (4) 사무이양시 예산.인력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이 발생하는가? (중앙)
- (5) 사무이양시 발생하는 예산.인력을 무리없이 감당할 수 있는가? (지방)

라. 지역간 형평성 및 균형발전

- (1) 자치단체간 형평성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무인가? (중앙)
자치단체간 형평성보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사무인가? (지방)
- (2) 제3자적 공정성이 필요한가? (중앙)
제3자적 공정성이 덜 필요한가? (지방)

마. 정책적 성격 대 집행적 성격

- (1) 일반적인 기준.요건.범위의 설정 등 정책수립 업무인가? (중앙)
- (2)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집행만 하면 되는 사무인가? (지방)

2. 지방자치단체사무 및 국가사무 예시

가. 지방자치단체사무(지방자치법 제9조)

기준	사무예시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할구역안 행정구역의 명칭 · 위치 및 구역의 조정◦ 조례 · 규칙의 제정 · 개폐 및 그 운영 · 관리◦ 산하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 · 감독◦ 소속 공무원의 인사 · 후생복지 및 교육◦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 예산의 편성 · 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공유재산관리◦ 호적 및 주민등록관리◦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 및 관리◦ 생활곤궁자의 보호 및 지원◦ 노인 · 아동 · 심신장애인 · 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 보건진료기관의 설치 · 운영◦ 전염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과 방역◦ 묘지 · 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 · 관리◦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지도◦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기준	사무예시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지·보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 농업자재의 관리 ◦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농외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농가부업의 장려 ◦ 공유림관리 ◦ 소규모 축산개발 및 낙농진흥사업 ◦ 가축전염병 예방 ◦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소비자보호 및 저축의 장려 ◦ 중소기업의 육성 ◦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우수 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 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개발사업 ◦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 지방도, 시·군도의 신설·개수 및 유지 ◦ 주거생활 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농촌주택개량 및 취락구조개선 ◦ 자연보호활동 ◦ 지방하천·준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도립·군립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 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지방궤도사업의 경영 ◦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 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사무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 · 체육 · 문화 · 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아원 · 유치원 · 국민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설치 · 운영 · 지도◦ 도서관 · 운동장 · 광장 · 체육관 · 박물관 · 공연장 · 미술관 · 음악당 등 공공교육 · 체육 ·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지방문화재의 지정 · 보존 및 관리◦ 지방문화 · 예술의 진흥◦ 지방문화 · 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및 직장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 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 · 감독◦ 화재예방 및 소방

4. 국가사무 예시(지방자치법 제11조)

- (1) 외교, 국방, 사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 (2)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 (3) 농림 · 축 · 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
- (4) 국가종합경제개발계획, 직할하천, 국유림, 국토종합개발계획, 지정항만, 고속국도 · 일반국도, 국립공원 등 전국적 규모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 (5)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의 통일 및 조정을 요하는 사무
- (6) 우편, 철도 등 전국적 규모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 (7)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검사 · 시험 · 연구, 항공관리, 기상행정, 원자력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 및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

【 별첨 6 】

'95 위임·위탁조치대상사무 및 그 조치계획

부처명 :

대상사무명	근거법령	위임·위탁유형	대상선정구분	조치계획

< 작성요령 >

1. 위임·위탁 유형란에는 지방위임(시·도, 시·도교육청, 시·군·구, 읍·면·동 등), 민간위탁(→○○공사, →○○협회 등)을 기재
2. 대상선정구분란에는 '95 신규선정, 행정쇄신과제 등을 기재
3. 조치계획란에는 「'95.○월중, 법개정후 시행령 개정」, 「'95.○월중 관계부처 협의후 조치」, 「위임·위탁규정개정시 조치」등으로 각 부처 조치계획을 시기·조치방법·선결사항 등과 함께 기재